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중·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연쇄화사업자"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9조와 동 시행령 제63조 및 도 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4 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용자상환금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 5 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금
2.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
4.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
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
6.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

③도지사는 통상산업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용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①도지사는 충청북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4.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 시장재개발 사업자
6. 연쇄화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상업협동조합의 조합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 7 조 (자금의 조달등) 도지사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몰자도입을 할 수 있다.

제 8 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수금 또는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부터 예탁 받을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 9 조 (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중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 지원사업, 정보화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중 중소기업입지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임대사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3.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입지지원 사업

③기금중 중소유통업구조개선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2.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3. 상점가진흥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5.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의 구조개선사업

④기금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건설사업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3.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 지원사업

⑤기금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물부지 매입 및 건축경비 지원사업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설기자재 구입 및 임대사업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경비 지원사업
4. 기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기금중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지원사업
2.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⑦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보조금, 이차차액보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관리

제 10 조 (용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의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대상사업, 용자한도, 용자조건, 용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용자신청) ①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용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2 조 (용자대상자의 선정) ①도지사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현지실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용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 조 (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2조에 의한 기금용자 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충북지역정보센터소장
5.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용자심의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용자조건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용자금리, 용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보 칙

제 15 조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보고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 17 조 (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도의회 및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전문기관의 협조)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9 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업담당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업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